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402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2.

발 의 자 : 김용태·서천호·김성원 김대식·김승수·이성권 정성국·엄태영·안철수 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, 학원설립·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,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·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,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문항 거래 등의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문항 출제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간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).

나. 행정처분,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(안 제15조의5제1항).

다. 교원에게 문항거래를 요구·의뢰·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, 제17조제1항제8호의3 및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).

라. 학원설립·운영자는 강사 등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고,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며,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(제17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).

마. 학원설립·운영자가 관리·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·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되,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1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운영하며”를 “운영하되 소속 임직원 및 강사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제6호까지, 제6호의2에”를 “제5호까지, 제5호의2, 제6호 및 제6호의2에”로 한다.

5의2. 제16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.

제15조의5제1항 중 “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, 교습과정별,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별로 분류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. 이 경우 학원 종류별, 교습과정별,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별로 분류하여야 한다.

2.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

3.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문항거래의 금지) 학원설립·운영자(소속 임직원 및 강사를 포함한다)는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, 컨설팅 등의 행위(이하 “문항거래”라 한다)를 요구·의뢰·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3.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문항거래를 한 경우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위반행위를 한 자의 직무배제 등) ① 학원설립·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6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(이하 “위반행위”라 한다)를 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강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② 학원설립·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배제 및 통보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과징금) ① 교육감은 학원설립·운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직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·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,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3. 위반행위의 고의·과실 여부
4.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인적 사항

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

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

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문항거래를 한 자

제2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① 학원설립·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,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,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.	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① ----------운영하되 소속 임직원 및 강사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.	제9조(결격사유 등) ①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의2. 제16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·6의2. (생 략)	6.·6의2. (현행과 같음)

7.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	7. ----------제5호까지, 제5호의2, 제6호 및 제6호의2에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강사 등)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3조(강사 등) ① ----------. 다만, 제9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5(정보의 공개)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, 교습과정별,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별로 분류하여 시·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	제15조의5(정보의 공개) ① ----------다음 각 호의 사항을----------.
<신 설>	1.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

	한 교습비등. 이 경우 학원 종류별, 교습과정별,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별로 분류하여야 한다.
<신 설>	2.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
<신 설>	3.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
<신 설>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6조의2(문항거래의 금지) 학원 설립·운영자(소속 임직원 및 강사를 포함한다)는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, 컨설팅 등의 행위(이하 “문항거래”라 한다)를 요구·의뢰·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7조(행정처분)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	제17조(행정처분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8의2. (생 략)	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의3.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문항거래를 한 경우
9. ~ 12. (생 략)	9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7조의2(위반행위를 한 자의 직무배제 등) ① 학원설립·운영자는 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제16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(이하 “위반행위”라 한다)를 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강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 ② 학원설립·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배제 및 통보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	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19조의2(과징금) ① 교육감은 학원설립·운영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직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·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,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. 위반행위의 고의·과실 여부 4.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

	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1. 납세자의 인적 사항 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4. (생 략) <신 설> ②·③ (생 략)	제22조(벌칙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문항거래를 한 자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9. (생 략) <신 설> 10. (생 략)	제23조(과태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9의2.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. (현행과 같음)